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자메시지를 통한 예비후보자홍보물·선거공보 발송 등 >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85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문자메시지를 통한 예비후보자홍보물·선거공보 발송 등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19.
3. 회 부 일 : 2024. 9.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선거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막대한 규모의 선거 홍보물이 제작·배포되어 이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제작된 선거공보는 총 5억 8천만 부로, 여의도 면적의 10배(29km²)이자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길이(156,460km)였으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제작된 선거벽보는 118만 부로, 이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면적의 11배(58,551m²)이자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길이(848km)에 달했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공보·벽보 제작에 사용된 종이 무게만 13,534톤(t)이었는데 이는 30년 된 나무 23만 그루를 베어낸 수준이었음.

유권자의 집마다 우편 발송되는 선거공보와 길거리에 게시되는 선거벽보는 결국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를 우편 발송하는 방법 외에 다른 규정이 없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친환경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이를 실천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본 개정안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를 우편발송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유권자의 이동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문자메시지로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선거벽보의 첩부 매수도 현행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5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문자메시지를 통한 예비후보자홍보물·선거공보 발송 등 (안 제60조의3제6항 등)

개정안은 예비후보자홍보물과 선거공보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및 선거공보 문제메시지 발송을 위한 이동전화번호 제공요청근거 마련 및 관련 절차 신설, 전자적 형태의 예비후보자홍보물·전자선거공보의 작성·제출 및 작성면수 제한을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 ⑤ (생략) <u><신설></u>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에서 선거권자의 이동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동전화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u>

<신 설>

<신 설>

⑥ 예비후보자홍보물의 규격·면수와 작성근거 등의 표시, 어깨띠·표지물의 규격,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선거벽보) ① 選舉運動에 사

⑦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 후단에 따라 제공받은 이동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야 하며, 문자메시지의 발송이 완료된 즉시 이동전화번호를 폐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이동전화번호의 제공 사실 통보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금지 행위에 관하여는 제57조의8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제4호·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은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이동전화번호”로 본다.

⑨ -----

-----정하되, 제6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면수의 상한은 전자적 형태가 아닌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면수의 상한의 두 배에 이르는 수로 하여야 한다.

제64조(선거벽보) ① -----

용하는 선거벽보에는 候補者의 寫眞(候補者만의 寫眞을 말한다)·姓名·記號(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學歷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正規學歷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卒業 또는 修了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正規學歷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學歷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敎育課程名과 修學期間 및 學位를 취득한 때의 取得學位名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外國의 敎育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정책 그 밖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
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
함하며, 候補者외의 者의 人物寫眞
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洞에 있
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邑에 있
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面에 있
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比率
을 한도로 작성·첨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貼付場所등을 감
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
에 1매의 比率까지 조정할 수 있
다.

② ~ ⑫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대통령선거에서는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포함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한다.

1천명 에

500명 에

200명 에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65조(선거공보) ① -----

-----이
조 및 제65조의2에서-----

② ~ ⑭ (생략)

<신설>

② ~ ⑭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전자선거공보) ①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우편발송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선거공보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마감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선거공보(이하 “전자선거공보”라 한다)가 제출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선거구안의 모든 선거권자의 이동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동전화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이동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이동전화번호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전자선거공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야 하며, 문자메시지의 발송이 완료된 즉시 이동전화번호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 이동전화번호가 없는 선거권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자선거공보를 수신

할 수 없는 선거권자가 있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전자선거공보를 인쇄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해당 선거권자가 속한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⑤ 전자선거공보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⑥ 전자선거공보를 작성할 경우 후
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전자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
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
로 전환하여 저장한 매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
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5조
제6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발송하
는 때에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
다.

⑦ 이동전화번호의 제공 사실 통보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금지 행위에
관하여는 제57조의8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4호·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여
론수립 등”은 “전자선거공보의 문
자메시지 발송”으로, “정당”은 “선
거관리위원회”로 본다.

⑧ 제6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전자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는 “전자선거공보”
로, “첩부”는 “발송”으로, “규격을

	<u>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는”으로,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은 “경력등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본다.</u> <u>⑨ 전자선거공보의 작성 주체, 게재 사항, 후보자공개자료에 관한 사항 및 접수 거부에 관하여는 제65조제1항·제8항·제12항을 준용한다.</u>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의2. 제65조의2에 따른 전자선거공보등의 작성비용 및 발송비용</u>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 ① (생략)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 ----- ----- -.
1. 1의2. (생략)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64조제1항·제9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제1항부터	1의3. ----- 제65조제1항(제65조의2제9항에서 준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선거벽보
· 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를
選舉運動을 위하여 작성·사용하
거나 하게 한 者

2. ~ 8. (생략)

③ ~ ⑤ (생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8제7항제3호(제108조의
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
보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4호
(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해
당 정당 또는 선거여론조사기관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5호(제
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시
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이용자
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08조
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한 자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

-----선거공
보·전자선거공보-----

2.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

1. -----

-----제4호
(제60조의3제8항, 제65조의2제7
항 및 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가상번호(제60
조의3제8항 및 제65조의2제7항의
경우에는 이동전화번호)를 제공
한-----제5호(제60조의3
제8항, 제65조의2제7항 및 제108
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상번호(제60조의3제8

2. ~ 5.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選舉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 파. (생략)

하. 제57조의8제7항제1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일까지의 기간, 여론수렴 기간 또는 여론조사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요청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항 및 제65조의2제7항의 경우에는
는 이동전화번호)를 제공한----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

-----제2호(제60
조의3제8항 및 제108조의2제
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초과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제공한 자	함한다)----- ----- -----휴대전 화 가상번호 (제60조의3제8 항의 경우에는 이동전화번호.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수---
거.·너. (생 략)	거.·너.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¹⁾은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③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 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발송하도록 하면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을 위해 예비후보자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후보자의 경우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의 경우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는 8면 이내로 후보자가 각각 작성하여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예비후보자홍보물과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방법에 우편외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추가하고,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전자적 형태의 예비후보자홍보물과 전자선거공보는 기존 예비후보자홍보물과 선거공보의 두 배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선거권자의 이동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예비후보자홍보물과 책자형 선거공보의 전자적 형태의 작성 및 문자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⑥예비후보자홍보물의 규격·면수와 작성근거 등의 표시, 어깨띠·표지물의 규격,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메시지 전송을 통해 환경친화적 선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선거권자의 휴대전화 가입 현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 방송매체이용 행태조사 결과²⁾에 따르면 전체 연령대의 휴대폰 보유율은 99.3%, 70세 이상의 경우 95.6%로 나타나 모든 선거권자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음.

또한,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사 또한 SKT, KT, LGU+ 등 이동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알뜰폰사업자도 존재하므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문자메시지로 예비후보자홍보물 및 전자선거공보를 전송할 경우 실제 문자메시지로 이를 수신할 수 있는 비중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음.

물론, 개정안은 전자선거공보를 문자메시지로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자선거공보와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시기에 차이가 생겨 선거권자 사이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전체 조사대상자 7,055명

또한 우편발송의 경우 ‘세대’를 단위로 이루어지나, 문자메시지 발송은 ‘개인’ 단위로 이루어져 세대 내 문자메시지를 수신받지 못한 세대원이 한명이라도 있을 경우 결과적으로는 우편을 통한 선거공보 발송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인쇄물 절약 효과는 떨어질 수 있음.

둘째, 이동통신사업자의 휴대전화번호 제공의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및 적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후보자홍보물과 전자선거공보의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하면 이동통신사업자는 3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실제로 해당 기간 내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³⁾

또한,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가입자의 주소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의 제공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휴대전화번호는 가상번호 처리된 것이 아닌 실제 이동전화번호인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제공·활용 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법적근거가 존재하고 공직선거라는 공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3) 선거여론조사를 위해 제공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경우 신청부터 제공까지 일주일 이상이 소요됨.

것이라 하더라도 이의 적절성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선거운동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여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자적 형태와 인쇄물 형태의 예비후보자홍보물·선거공보 사이의 상이한 면수 제한 등 형평성 문제, 선거권자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에 따른 침해 및 전자선거공보를 수신할 수 없는 선거권자에 대한 알권리 축소 우려 등의 사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